

# 圖書館振興法案에 대한 審査報告

## 1. 審査經過

가. 提案日字 및 提案者 : 1990年 12월 8일 政府

나. 回附日字 : 1990年 12월 8日

다. 上程日字 : 第152回 國會(臨時會)

第3次 文化公報委員會('91. 2. 4)

上程·文化公報小委員會 回附

第4次 文化公報委員會('91. 2. 6)

文化公報 小委員會 審査報告·議  
決

文化發展 및 平生教育에 이바지하는 施設로  
規定함(案 第1條 및 第2條).

(2) 圖書館이 地域文化의 中心機關으로서의 役割  
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地域內 各  
종 文化施設과 協力하도록 함(案 第7條).

(3) 圖書館의 균형있는 발전과 圖書館機能의 효율  
적 수행을 위하여 主要 長·短期 政策과 施策  
樹立등에 관한 諮問機關으로 文化部長官 소속  
하에 圖書館發展委員會를 設置함(案 第9條).

(4) 政府는 圖書館의 設立, 施設 및 資料의 확충,  
司書職員의 資質向上 및 研究등을 위하여 圖  
書館振興基金을 設置·運用할 수 있도록 함  
(案 第10條).

(5) 國立中央圖書館을 文化部長官 소속으로 하고  
國家代表圖書館으로서의 機能을 확충함(案 第  
15條 내지 第17條).

(6) 원활한 圖書流通을 위하여 國立中央圖書館은  
出版關聯 專門機關·團體등과 協助하여 圖書  
및 連續刊行物에 대한 國際標準資料番號를 부  
여하도록 함(案 第18條).

(7) 圖書館 從事者의 資質向上과 專門業務 수행의  
효율화를 위하여 研修機能을 확충하는 한편  
圖書館운영의 專門化를 위하여 國·公立公共  
圖書館의 館長을 司書職으로 補하도록 하되,  
司書職의 現員 부족등을 고려하여 大統領令으  
로 정하는 時期까지는 中진과 같이 行政職으  
로도 補할 수 있도록 함(案 第6條·第16條·  
第24條 및 附則 第4條).

(8) 公共圖書館의 施設 및 資料의 확충을 위하여

## 2. 提案說明의 要件

### 가. 提案理由

오늘날 圖書館은 教育·情報 및 文化의 中心機關  
으로서의 그 機能과 役割이 크게 要求되고 있으  
므로, 圖書館이 大學등 各級 學校의 教育活動을 支援  
하는 教育的 機能을 수행하는 외에 各種 文化施設과  
協力하여 地域文化空間으로서의 役割을 擔當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國民의 文化享受權을 伸張하고 圖  
書館業務의 電算化·標準化 및 協力網을 構築하여  
情報의 이용과 流通을 活性化하며, 특히 公共圖書館  
에 대한 綜合的인 振興政策을 國家的인 次元에서 樹  
立·推進함으로써 圖書館의 劃期的인 育成과 發展을  
도모하려는 것임.

### 나. 主要骨子

(1) 圖書館의 定義를 公衆에의 情報제공을 통하여

圖書館振興法案에 대한 審査報告 내용을 “圖書館文化”에 게재한 이유는 圖書館振興法の 재정취지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동법에 대한 의문 사항은 상기 審査報告를 참고하기 바란다.

國家·地方自治團體의 公共圖書館 設立·育成義務를 規定하고, 地域의 特性에 따라 分館·移動圖書館 및 貸出文庫의 設置를 規定함(案 第21條).

- (9) 公立公共圖書館의 균형있는 발전등을 위하여 文化部長官이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案 第23條).
- (10) 民法 기타 法律에 의하여 設立된 法人·團體와 개인이 公共圖書館를 자유롭게 設立·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私立公共圖書館의 設立을 登錄制로 하고, 私立公共圖書館의 지원·육성에 중점을 두도록 함(案 第25條 및 第26條).
- (11) 大學 및 大學教育課程이상의 教育機關에는 大學圖書館을, 國民學校·中學校·高等學校 및 이에 準하는 各種學校에는 學校圖書館을 각각 設置하여 研究 및 教育活動과 관련된 圖書館機能을 수행하도록 함(案 第31條 내지 第36條).
- (12) 圖書館資料의 효율적인 流通·管理 및 이용을 위하여 圖書館協力網을 구성하고 各級圖書館 및 文化施設과 協力關係를 유지하도록 함(案 第39條 및 第42條).
- (13) 文化部長官은 私立公共圖書館·專門圖書館 및 特殊圖書館의 登錄 및 指導業務를 管掌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그 業務의 일부를 市·道 또는 圖書館協會에 委任 또는 委託할 수 있도록 함(案 第25條第1項·第26條·第37條第2項 및 第44條).

### 3. 專門委員 檢討報告의 要旨

#### 가. 圖書館 機能의 調整

이 法案은 지금까지의 圖書館政策이 各級學校의 教育活動을 補助支援하는 教育政策的 次元에서 推進되어 왔으나 社會環境의 變化로 圖書館 특히 公共圖書館의 圖書館奉仕를 통한 教育·情報·文化的 機能과 役割이 크게 要求됨에 따라, 公共圖書館의 機能

을 國民의 文化享受權 伸張을 위한 地域文化센터로서 文化政策的 次元에서 育成 發展시켜야 할 必要性이 나타났을 뿐만아니라, 그동안의 부진한 圖書館發展을 打開하기 위하여 情報化社會에 對應하기 위한 地域文化 綜合施設로서의 公共圖書館의 育成 發展과 公共圖書館業務의 文化部移管을 主張해온 圖書館協會등 圖書館 關聯團體들의 意見を 反映하여, 政府에서는 圖書館의 機能을 二元化하여 教育的 補助·支援施設로서의 大學·學校圖書館은 종전대로 教育部에서 管掌하고, 國立中央圖書館과 地域文化空間으로서의 公共圖書館은 文化部에서 總括하도록 圖書館의 機能을 調整 이를 法制化하기 위하여 現行 圖書館法을 廢止하고 새로히 圖書館振興法을 제정하려는 것임.

따라서 이와같은 機能調整을 前提로한 이 法案의 骨子は 國立中央圖書館을 國家代表圖書館으로서 文化部長官 所屬으로 하고, 圖書館發展基本政策 樹立을 위해 諮問機關으로 圖書館發展委員會를 文化部長官 所屬하에 두며, 圖書館의 設立·施設·資料의 擴充과 司書職員의 資質向上등 圖書館發展資金에 充當하기 위하여 設置한 圖書館振興基金을 文化部長官이 管理 運用토록 하고, 公共圖書館에 대한 文化部長官의 支援規定을 新設하는 외에 文化部長官이 圖書館의 相互協力連系體制인 圖書館協力網을 構成토록 함으로써 圖書館의 綜合的인 振興政策을 文化部에서 管掌하게 하되, 大學 및 學校圖書館은 教育的 次元에서 教育部가 계속 管掌 指導 監督토록 하고 있음.

이에 대해서는 위에서 說明한 바와같이 政府의 圖書館機能調整과 이에 따른 圖書館 管掌機關의 調整은 現在의 不振한 圖書館發展狀態와 社會的 與件變化에 따른 公共圖書館에 대한 地域文化奉仕機能 및 知識·情報의 管理 流通센터로서의 機能과 役割이 크게 要求되고 있는 實情을 考慮할 때, 教育的 補助支援機能을 擔當하는 大學 및 學校圖書館을 除外한 公共圖書館, 專門圖書館 및 特殊圖書館에 대하여 文化政策的 次元에서 文化부가 圖書館政策의 總括機能을 담당토록 改編하는 것은 우리나라 圖書館의 發展과 圖書館奉仕의 活性化를 위해 필요한 政策決定이라고 思料됨.

나. 公立公共圖書館의 設立 運營 主體問題와 公立公共圖書館과 文化部의 關係

案 第21條 및 第22條에 의하면,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公共圖書館을 設立 育成토록 하고, 地方自治團體가 設立·運營하는 公立公共圖書館의 運營費는 當該 地方自治團體의 會計에서 負擔하고, 教育法 第52條의 規定에 의하여 教育長이 設立·運營하는 公立公共圖書館(市·郡·區 教育廳 所管 公共圖書館)에 대하여는 市·郡·區 教育廳에서 運營費를 負擔하되 當該 地方自治團體의 一般會計에서도 運營費의 一部를 負擔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全國223個 公立公共圖書館중 地方自治團體인 市·郡·區廳이 設立한 39個 公共圖書館의 運營主體는 當該 地方自治團體가, 市·郡·區 教育長이 設立한 184個 公共圖書館의 運營主體는 市·郡·區 教育廳이 現在대로 運營主體가 되나 長期的으로는 地方自治團體로 一元化한다는 前提아래 現行의 二元的 運營體制를 그대로 維持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案 第23條에서는 公立公共圖書館의 發展과 圖書館奉仕를 위하여 文化部長官이 公立公共圖書館에 대하여 필요한 支援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私立公共圖書館과 專門 및 特殊圖書館의 登錄·指導·支援 業務를 文化部長官이 管掌하도록 하고 있음(案 第25條, 第26條, 第37條, 第38條).

먼저 公立公共圖書館의 運營主體問題에 관하여는, 圖書館 關聯團體의 立場은 落後된 圖書館의 育成發展을 위하여 大學 및 學校圖書館의 教育部 管掌은 不可避하나 모든 公共圖書館은 文化部 所屬으로 一元化하여야 한다는 見解도 있었으나, 現實적으로 地方自治團體에서 設立運營하는 39個의 公共圖書館과 教育法 第52條의 規定에 의해 教育長이 設立·運營하고 있는 184個의 公共圖書館 모두를 文化部 所屬으로 移管하는 問題는 財產移管節次에 있어서 地方議會의 同意가 있어야 하고(地方財政法 第81條), 移管되는 公立公共圖書館 運營費의 文化部 負擔問題, 公立公共圖書館 職員의 所屬變更으로 인한 身分上的 變動問題등이 發生될 뿐만아니라, 現行地方自治法 第9條에 의해 圖書館의 設置管理는 地方自治團

體의 固有業務로 規定하고 있는 點을 勘案할 때, 公共圖書館의 設立·運營은 地方自治團體에서 設立·運營하는 것을 原則으로 하고, 政府案에서와 같이 文化部는 圖書館政策의 中央行政機關으로서의 機能을 擔當, 地方自治團體에서 設立·運營하는 公共圖書館에 대하여 指導·支援業務를 擔當하도록 그 機能을 調整하는 것이 現實적으로 不可避하다고 判斷되며, 다만 現在 市·郡·區 教育長이 設立·運營主體인 184個 公共圖書館에 대하여는 學生 뿐만아니라 一般주민이 利用하는 地域文化센터로서의 公共圖書館의 機能上 地方自治團體 運營으로 一元化되어야 하나, 一元化에는 地方自治團體의 財政方便이나 職員의 身分變動과 人事面에서 어려움이 따를 것이므로 長期的으로의 一元化 方針 아래 現在의 二元的 運營體制의 維持가 不可避한 것으로 보여지며, 向後 公共圖書館 運營主體의 地方自治團體 一元化 推進은 文化部 圖書館政策의 總括의 機能 특히 公共圖書館에 대한 文化部の 指導·支援機能의 效果的인 수행여부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음.

다음으로 公立公共圖書館과 文化部の 關係 즉 公立公共圖書館에 대한 文化部長官의 指導·支援機能에 관하여는, 案 第23條第1項에서 文化部長官은 公立公共圖書館의 發展과 圖書館奉仕를 위하여 필요한 支援을 할 수 있다고 規定하고, 同條 第2項에서 公立公共圖書館에 대하여 書類提出 要求權을 規定하고 있는바, 이 規定은 公立公共圖書館의 運營主體와 文化部와의 業務上 指導·監督關係를 規定하고 있는 條項으로서 地方自治團體의 固有業務에 대한 國家의 指導 監督 關係를 規定하고 있는 地方自治法 第155條의 規定과 比較할 때, 단순히 公立公共圖書館에 대한 支援機能만을 規定하고 있어 均衡이 맞지 아니하며, 圖書館에 대한 綜合政策을 遂行하는 文化部長官은 公立公共圖書館에 대하여 財政的·技術的 支援 뿐만아니라 圖書館發展과 奉仕를 위한 行政指導機能도 아울러 갖도록 規定하는 것이 妥當하다고 思料됨. 따라서 案 第23條第1項중 “필요한 支援을 할 수 있다”를 “필요한 指導·支援을 할 수 있다”로 수정함이 妥當함(地方自治法 第155條에서는 中央行政機關의 長은 地方自治團體의 業務에 관하여 助言·勸

告·指導할 수 있으며 필요한 資料提出을 要求할 수 있고 財政支援·技術支援을 할 수 있도록 規定하고 있음).

#### 다. 國·公立公共圖書館長의 司書職化

案 第24條에 의하면,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가 設立운영하는 公共圖書館의 館長은 司書職으로 補한다”라고 規定함으로써, 現行圖書館法에서 公立公共圖書館의 館長은 司書職 또는 行政職중 선택적으로 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現行制度를 國立 및 公立公共圖書館 모두에 대하여 館長은 司書職으로 任用하도록 任用職制을 一元化하고 있음.

現在 우리나라 36個 大學(專門大學 포함)에서 年間 1,800餘名의 司書資格證 所持者가 輩出되고 있으나, 司書의 機能을 단순히 圖書의 蒐集, 整理 등 그 機能을 消極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을 뿐 아니라, 司書職 公務員의 公開競爭採用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또한 司書職 公務員에 대한 昇進等 發展機會가 充分히 提供되지 못하여, 專門職 司書들이 公共圖書館 勤務를 꺼리게 됨으로써, 現 公共圖書館 總職員 2,078名중 司書資格證 所持者가 218名(10.49%)에 지나지 않으며 223個 公共圖書館중 專門職 司書가 없는 公共圖書館이 30個館, 1人的 司書만 있는 公共圖書館이 90個館에 이르고 있음.

또한 現 公共圖書館長의 任用現況을 볼 때에 5級 이상의 公務員이 館長으로 되어 있는 112個館중 司書職이 館長인 公共圖書館은 4個館이며, 6級이하 公務員이 館長으로 되어 있는 88個館중 司書職이 館長인 公共圖書館은 13個館으로 나타나 있음.

이와같이 專門職司書가 不足한 公共圖書館의 現實情과 圖書館關聯團體에서 主張해 온 公共圖書館長의 司書職 任用要請을 考慮하여 政府案은 國·公立公共圖書館長을 司書職化 함으로써 司書職中心의 公共圖書館 運營體制로 轉換하려는 것임.

이에 대해서는 現在의 不振한 圖書館 發展狀況과 관련 情報社會에 대비한 公共圖書館의 科學的·組織的 運營과 積極的인 圖書館奉仕의 구현等 圖書館 發展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有能한 專門司書職 公

務員의 確保가 필수적이라고 判斷되며, 이를 위한 國·公立公共圖書館長의 司書職化는 專門 司書要員의 確保를 위해 效果的인 方案이라고 思料됨.

다만, 現 公立公共圖書館長의 職級에 該當하는 司書職員이 圖書館 숫자에 비하여 현저히 不足한 實情이고, 또한 現在 대부분인 行政職 公立公共圖書館長의 人力需給을 考慮할 때, 國·公立公共圖書館長의 單一司書職 任用을 즉시 施行하는 것은 無理이므로 政府案은 이의 施行을 附則 第4條에서 별도로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날까지 留保하는 經過措置를 規定하고 있는 바, 이의 施行日時의 지나친 長期化는 法 規定의 死文化를 가져올 우려가 있으므로 人力需給 展望을 고려 短期化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現 公務員任用令에 의하면 司書職 公務員의 職級上限이 4級으로 限定되어 있어 3級 이상의 公務員으로 補하는 公立公共圖書館의 館長은 司書職으로 補할수 없는 바, 이 法案 第24條의 趣旨에 맞도록 公務員 任用令을 改正하여 司書職制의 職級上限을 3級 이상으로 擴大 調整하여야 할 것으로 判斷됨.

#### 라. 國立中央圖書館 納本制度

案 第17條 第2項에서는,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外의 者가 圖書·連續刊行物·音盤·비디오物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資料를 發行·製作한 때에는 發行·製作日로부터 30日이내에 그 資料 2部를 國立中央圖書館에 納本하여야 한다고 規定하고, 同條 第3項에서는 納本한 者에게 그 資料에 대한 補償을 하여야 한다고 規定하며, 案 第45條에서는 納本을 하지 아니한 者에게 當該 資料定價(非賣資料인 경우 當該 刊行 資料의 原價)의 10배에 該當하는 金額이하의 過怠料를 賦課하도록 規定하여, 現行 圖書館法에서의 國立中央圖書館 納本制度를 그대로 受容하고 다만, 納本の 對象範圍를 從前 施行令에서 정하고 있던 音盤·비디오物까지 擴大하여 法에 規定하고 있는 것이 差異點 임.

이에 대해서는 國立中央圖書館 納本制度의 경우 圖書館에 모든 國內資料를 빠짐없이 蒐集·收藏하기 위해 國立圖書館에 納本을 義務化하는 制度로서, 國

家 文獻의 收藏, 著作出版權의 登錄과 保存, 圖書館 資料 및 情報의 國際交換등을 위해 西獨·日本 등도 圖書館法에서 規定하고 있는 制度이나, 現在 우리나라에서의 納本制度는 現行 圖書館法外에 出版社 및 印刷所의 登錄에 관한 法律, 外國刊行物 輸入·配布에 관한 法律, 定期刊行物의 登錄등에 관한 法律, 國會圖書館法등에서 多樣하게 規定하고 있어 各 法律上의 納本의 意義·對象·節次·補償등이 달라 納本義務者에 대하여 負擔과 混亂을 주고 있다는 指摘이 있음을 考慮할 때, 向後 各 個別法에서 定하고 있는 納本制度를 國立中央圖書館 納本으로 一元化하는 制度改善을 통하여 納本義務者의 不便과 負擔을 줄이고 現在 低調한 納本率을 提高하는 方案을 檢討할 필요가 있다고 思料되며, 納本補償에 있어서도 適正한 補償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이와 관련하여 第17條第3項의 納本補償 規定에 있어서 國立中央圖書館은 “納本을 한 者에게 그 資料에 대한 補償을 하여야 한다”고 規定하고, 同條 第5項에서 補償에 관하여 필요한 事項은 大統領令에 委任하고 있으나, 憲法의 財産權報償 條項의 趣旨나 定期刊行物의 登錄등에 관한 法律에서와 같이 第17條第3項중 “補償을 하여야 한다”를 “정당한 補償을 하여야 한다”로 修正하여 補償基準을 明示하는 것이 妥當하다고 思料됨.

#### 마. 附則 經過措置

이 法案은 附則에서 現行 圖書館法을 廢止하고 새로이 圖書館振興法을 制定함에 따라, 從前의 圖書館法에 의하여 市·郡·區 教育長에게 登錄하고 設立된 私立公共圖書館, 專門圖書館 및 特殊圖書館에 대하여는 이 법에 의하여 文化部長官에게 登錄한 것으로 보는 經過措置를 됴으로써 既得의 權利와 地位를 保護하고 있으나, 圖書館設立者가 圖書館 相互間의 資料交換, 業務協助, 共同利益增進등을 위하여 現行 圖書館法 第14條에 의하여 既 設立된 圖書館協會에 대하여는 經過措置 規定이 없음.

이에 대해서는 案 第14條에서 規定하고 있는 圖書館協會 設立規定은 法人設立 認可權을 文化部長官으

로 變更한 것 外에는 現行 圖書館法과 內容의 規定으로서, 既存法律에 의해 認可받은 圖書館協會가 이 법에 의하여 새로이 文化部長官의 法人設立認可를 받게 할 特別한 事由가 없음.

따라서 現行圖書館法 第14條에 의하여 1956年 文敎部長官의 認可를 받아 設立된 圖書館協會에 대하여는 既存의 地位를 認定하여 이 법에 의하여 文化部長官의 認可를 받아 設立된 것으로 보는 經過措置를 附則에 新設하는 것이 妥當하다고 思料됨. 즉 案 附則 第5條를 第6條로 하고, 第5條를 다음과 같이 新設하려는 것임.

第5條(圖書館協會에 대한 經過措置)이 法 施行當時 從前의 圖書館法 第14條의 規定에 의하여 設立된 圖書館協會는 이 법에 의하여 設立된 것으로 본다.

#### 바. 特殊教育振興法과의 相衡問題

이 圖書館振興法案에서는 障礙人에게 學習·敎養 등 圖書館奉仕를 提供하는 圖書館을 特殊圖書館으로 定義하고, 法人·團體·個人이 特殊圖書館을 設立하고자 할 때에는 施設등의 基準을 갖추고 文化部長官에게 登錄하도록 하고 있음. (案 第2條 第7號, 第37條, 第38條)

이와 관련하여 問題가 되는 것은 1977.12 制定된 教育部 所管法律인 特殊教育振興法 第15條에서 規定하고 있는 視聽覺 障礙者를 위한 點字圖書館 規定임.

同法 第15條의 點字圖書館 規定內容은 點字圖書館의 業務範圍, 施設·設備基準의 教育部令 委任, 教育部 登錄, 國庫補助 事項으로서 이 規定內容은 圖書館振興法案과 다음과 같은 點에서 相衡되고 있음. 즉 同法의 點字圖書館은 이 法案에서의 特殊圖書館에 該當되고, 點字圖書館의 設立登錄을 特殊教育振興法에서는 教育部長官에게, 이 法案에서는 文化部長官에게 登錄하고, 點字圖書館의 施設·設備基準을 特殊教育振興法에서는 教育部令으로 이 法案에서는 이 法 施行令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어 同一한 點字圖書館(特殊圖書館)에 대하여 서로 相衡한 法條文이 存在하게 되는 矛盾이 생기게 됴.

點字圖書館에 대하여 이와같은 法律 條項上의 相衡이 發生되게 된 것은, 當初 點字圖書館은 教育部所管인 特殊教育振興法 第15條의 適用을 받아 왔으나 1987. 11 圖書館法을 改正하여 點字圖書館을 圖書館法上의 特殊圖書館의 範圍에 포함시켜 圖書館法의 適用을 받도록 變更하였음에도 當初 適用法律인 特殊教育振興法 第15條를 削除整備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이 問題를 해소하기 위하여는, 이 法案 附則 第5條의 다른 法律의 改正 條項에서 特殊教育振興法 第15條를 削除하는 改正方案을 檢討할 수 있으나, 國會에서의 立法慣行上 附則에서의 他法律改正은 法律의 制定·改正·廢止로 인하여 이와 관련된 法律의 該當 條項을 制定·改正·廢止되는 法律과 맞추는 範圍 안에서 名稱·字句·引用條文의 整理·整備를 위한 改正에 限定되고, 實質的인 內容變更을 가져오

는 他法律의 條文改正은 當該 法律의 改正案提出節次를 밟도록 하고 있는 點을 勘案할 때 立法技術上 困難하며, 教育部에서 特殊教育振興法 第15條 規定을 削除하는 法改正을 推進하여야 할 것임.

다만, 特殊教育振興法 改正前에 이 法의 制定 施行에 따른 既存 點字圖書館의 登錄 및 管轄問題에 대하여는, 法解釋上 1987. 11 圖書館法을 改正하여 點字圖書館을 圖書館法의 特殊圖書館에 포함시켜 圖書館法에 의한 登錄(市·郡·區教育長에게 再登錄)을 하게하였고, 이 法의 制定 施行과 동시에 圖書館法에 의하여 登錄된 特殊圖書館(點字圖書館 포함)은 이 法에 의하여 登錄된 것으로 보는 經過措置를 附則 第3條에 두고 있으므로, 點字圖書館도 文化部長官에 登錄된 特殊圖書館으로 보아 이 法의 適用을 받는 것으로 解釋하는데 無理가 없을 것으로 思料됨.

## 회원 입회절차

회원에 입회코자 하실 때에는 회원입회 신청서에 소정사항을 기재 날인하여 제출하고 소정회비를 납부하시면 회원증을 교부받게 됩니다.

- ※ 1. 전화신청가능
- 2. 회원가입시특전은 평생 회원란 참조
- 3. 연락처 : 한국도서관협회
  - 전화 : 535-4868·5616

## 회원의 구분

회원구분	회비(연)	입 회 기 준
단체회원 1	180,000원	특별시·직할시·도청소재지의 국공 사립 공공도서관/대학(교)도서관/연구기관 부설도서관/금융기관 및 기업체 부설도서관/중앙부처 부설도서관/군기관 부설중앙도서관/기타 주요도서관
단체회원 2	120,000원	시소재지의 공사립 공공도서관/전문대학 도서관/관공서 및 사회단체 부설도서관/ 군기관 부설도서관/기타 주요도서관
단체회원 3	40,000원	초중고등학교도서관(실)/군읍면소재 공사립 공공도서관(부회비 2,000원 포함)
개인회원	15,000원	도서관에 근무하는 직원으로 자격증 (1급정사서·2급정사서·준사서·사서교사) 을 소지한 자 및 도서관학을 18학점이상 이수하고 자격증을 소지한 자